

규정해설

소화설비 할인 규정

규정에 의해 본 협회가 실시하고 있는 소화설비 할인검사에 합격한 소화설비는 아래 표와 같이 보험가입시 보험료 할인혜택이 주어진다. 본고에서는 이러한 규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소방법규와 대비, 요약하여 연재한다.

-소 화 설 비 할 인 율 표-

소 화 설 비 의 종 류				할 인 율		
1	옥	외	소 화 전 설 비	갑	기본요율의 15%	
				을	" 12%	
				병	" 8%	
2	옥	내	소 화 전 설 비	갑	기본요율의 10%	
				을	" 8%	
				병	" 5%	
3	동	력	소 방 펌 프	소 방 자 동 차	" 15%	
				기 타	" 8%	
4	자	동	화 재 경 보 설 비	"	8%	
5	자	동	화 재 속 보 설 비	"	5%	
6	스 프 링 클 러 설 비	1	모든 시설이 규정에 적합할 때	"	60%	
			미달규정의 수가 1개일 때	"	50%	
			" 2개일 때	"	40%	
			" 3개일 때	"	30%	
			" 4개일 때	"	20%	
			" 5개 이상일 때	"	15%	
3	상기 1 및 2 이외에 유효할 때	"	10%			
7	이 소	산 화 설 비	전 역 방 출 방 식	자동	" 20%	
				수동	" 10%	
			국소방출방식		"	8%
			호스, 노즐방식		"	5%
8	포	소 화 설 비	"	5%~18%		
9	할 소	론 화 설 비	1 3 0 1 전 역 방 출 방 식	자동	" 20%	
				수동	" 10%	
			국소방출방식		"	8%
			호스, 노즐방식		"	5%

⊙ 이 할인은 초기 소화설비를 병설한 경우에만 적용되며, 검사의 유효기간은 1년임.

⊙ 2종 이상의 설비가 병설된 경우에는 이들의 할인율이 60%를 초과할 수 없다.

소화설비할인규정과 소방법규의 비교

구 분	소 방 법 규	소 화 설 비 할 인 규 정																						
<p>소화기 (소화설비규정 : '80.12.23 개정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시설기준규칙 별표1-소방대상물 및 위험물별 소화설비의 적용성 * 시설기준규칙 별표2-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 * 시설기준규칙 별표3-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기준 * 시설기준규칙 별표4-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 <p># 소형소화기(A급 10단위, B급 20단위 미만)-보행거리 20m 이내</p> <p># 대형소화기-보행거리 30m 이내</p> <p># 소화기 설치수 감면: 옥내소화전등 소화설비 설치시 2/3를 감면(대형소화기는 1/2)</p> <p># 대형소화기 설치 배제: 옥내·외소화전, 동력소방펌프 및 물분무 등 소화설비의 유효범위 내</p> <p># 1992. 7. 28 소방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및 소방시설의 설치유지기준 개정사항은(개정을 위한 검토 진행중) 없음.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소방법에서 규정한 기준에 의거 적용소화기를 설치(완화규정은 적용하지 않함) 																						
<p>옥내소화전 ('82. 5. 7)</p> <p>1. 수원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130 ℓ /min×20분×소화전수(최대 5개) # 1차 수원, 2차 수원 구분없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1차 수원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751 872 1188 1178"> <thead> <tr> <th>할 인 율</th> <th>소 화 전 수</th> <th>유 효 수 량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갑</td> <td>2개 이하</td> <td>20m³</td> </tr> <tr> <td>3개 이상</td> <td>30m³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을</td> <td>2개 이하</td> <td>12m³</td> </tr> <tr> <td>3개 이상</td> <td>18m³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4">병</td> <td>2개 이하</td> <td>6m³</td> </tr> <tr> <td>3개 이하</td> <td>9m³</td> </tr> <tr> <td>4개 이하</td> <td>12m³</td> </tr> <tr> <td>5개 이상</td> <td>15m³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2차수원: 고가탱크, 압력탱크로 1차수원의 50% 이상 	할 인 율	소 화 전 수	유 효 수 량	갑	2개 이하	20m ³	3개 이상	30m ³	을	2개 이하	12m ³	3개 이상	18m ³	병	2개 이하	6m ³	3개 이하	9m ³	4개 이하	12m ³	5개 이상	15m ³
할 인 율	소 화 전 수	유 효 수 량																						
갑	2개 이하	20m ³																						
	3개 이상	30m ³																						
을	2개 이하	12m ³																						
	3개 이상	18m ³																						
병	2개 이하	6m ³																						
	3개 이하	9m ³																						
	4개 이하	12m ³																						
	5개 이상	15m ³																						
<p>2. 소화펌프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설치장소-점검편리, 피해우려 적은 곳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설치장소-소방법과 동일 																						
<p>3. 성능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방수압, 방수량: 최대 5개 개방 1.7kg/cm² 이상 130ℓ/min 이상 (최고 7kg/cm² 이하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소화전은 최소 2개, 최대 5개 동시개방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751 1365 1188 1502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방 수 압</th> <th>방 수 량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갑</td> <td>2.5kg/cm²</td> <td>250 ℓ /min</td> </tr> <tr> <td>을</td> <td>2.0kg/cm²</td> <td>150 ℓ /min</td> </tr> <tr> <td>병</td> <td>1.7kg/cm²</td> <td>130 ℓ /min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갑 : 창고건물, 극장 및 영화관무대 옥외소화전 할인시 미포용 부분</p> <p>을, 병 : 일반건물, 공장건물, 불연성 물품 수납 창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최고방수압-소방법과 동일 	구 분	방 수 압	방 수 량	갑	2.5kg/cm ²	250 ℓ /min	을	2.0kg/cm ²	150 ℓ /min	병	1.7kg/cm ²	130 ℓ /min										
구 분	방 수 압	방 수 량																						
갑	2.5kg/cm ²	250 ℓ /min																						
을	2.0kg/cm ²	150 ℓ /min																						
병	1.7kg/cm ²	130 ℓ /min																						

구 분	소 방 법 규	소 화 설 비 할 인 규 정
4. 물울림장치	* ϕ 15mm, 100ℓ(자동급수)	* 물울림탱크 용량: 150ℓ 이상(자동급수 ϕ 15mm인 경우 100ℓ 이상)
5. 펌프	* 전용(단, 타 소화설비 겸용가능)	* 전용(단, 옥외소화전 겸용가능)
6. 배관	* 재질: KSD3507, KSD3562 * 입상관: ϕ 50mm 이상 * 동결우려장소: 보온조치 * 밸브류; 개폐표시형 * 용도: 전용(타 소화설비 겸용가능) * 유속: 3m/sec 이하 * 주배관 등: 연결송수관 겸용가능 (ϕ 100mm 이상) * 성능시험배관: 펌프토출측 개폐밸브 이전	* 소방법과 동일 * 소방법과 동일 * 소방법과 동일 * 제한없음 * 소방법과 동일 * 2m/sec 이하 * 규정없음 * 규정없음
7. 기동장치	* 수압개폐 기동장치의 설치대상이 구분됨(학교, 공장, 사업장, 창고는 제외)	* 규정없음 (원격기동스위치만 표기됨)
8. 호스	* 예비호스 규정없음	* 예비호스로서 최소 2개 이상 총 설치수의 20% 이상 비치
9. 소화전수	* 층마다, 수평거리 25m 이내	* 소방법과 동일
10. 전원, 배선	* 전용회로 구성 * 11층 이상 예비전원 설치 (자동전환 구조) * 600V 2층 비닐절연전선 등	* 소방법과 동일 * 소방법과 동일 * 소방법과 동일
11. 비상통보 설비	* 규정없음	* 화재경보기, 전화, 벨 등 설치(각층)
12. 유지관리	* 작동 기능점검: 년 2회 이상 * 종합 정밀점검: 년 1회 이상	* 외형점검: 월 1회 이상 * 기능점검: 분기 1회 이상 * 정밀검사: 년 2회 이상 # 유지관리 대장 비치
13. 소화훈련	* 제한없음 # 소방법 제9조(특수장소의 방화관리)참조 # 소방법 시행령 제10조(소방계획)참조	* 주야 2인 이상 근무 (조작이 능숙한 인원 근무)
14. 할인대상		* 소화전 설치건물 * 할인적용 제외건물: 1. 일부 위험물취급소, 제조소 2. 일부 위험물 저장소 3. 7,000V 초과하는 발전소 등 4. 락크식 창고(높이 10m 이상, 연면적 800m ² 이상으로 승강기 반송) 5. 주수 소화가 불가능한 장소
옥외소화전 ('82. 5. 7)		
1. 수원	* 350ℓ/min × 20분 × 소화전수(최대 2개)	* 갑-80m ³ 이상 * 을-50m ³ 이상 * 병-20m ³ 이상 * 1차, 2차 수원 구분없음
2. 소화펌프	* 옥내소화전 준용	* 옥내소화전 준용

구분	소방법규	소화설비할인규정												
3. 성능	* 방수압, 방수량-최대 2개 개방 2.5kg/cm ² , 350ℓ/min 이상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할인율</th> <th>방수압</th> <th>방수량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갑</td> <td>3.0kg/cm</td> <td>450ℓ/min</td> </tr> <tr> <td>을</td> <td>2.5kg/cm</td> <td>350ℓ/min</td> </tr> <tr> <td>병</td> <td>2.5kg/cm</td> <td>350ℓ/min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* 최고 방수압 : 7kg/cm² 이하</p>	할인율	방수압	방수량	갑	3.0kg/cm	450ℓ/min	을	2.5kg/cm	350ℓ/min	병	2.5kg/cm	350ℓ/min
할인율	방수압	방수량												
갑	3.0kg/cm	450ℓ/min												
을	2.5kg/cm	350ℓ/min												
병	2.5kg/cm	350ℓ/min												
4. 물유통장치	* 옥내소화전 준용	* 옥내소화전 준용												
5. 배관	* 옥내소화전 준용	-												
6. 포용	* 수평거리 40m 이내	* 갑 : 30m 이내 * 을, 병 : 40m 이내 * 미포용 부분은 옥내소화전(갑) 이상의 성능 확보												
7. 합동	* 소화전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 * 호스-φ65A * 관장 : 방사형	* 소방법과 동일 * 구경제한 없음(예비호스 3개 이상) * 제한없음 * 위치표시등 설치												
8. 시동장치	* 내연기관-소화전에서 원격기동 및 기동명시등 설치 * 각 소화전함에는 가압송수장치의 조작부 시동명시등 설치	* 수압개폐기 동방식, 대용량펌프 내연기관 * 기동방식은 각 소화전마다 시동장치 생략가능(단, 소화전에서 펌프실 연락 가능)												
9. 배선	* 전기설비 기술기준령 준용 * 600V 2중 비닐절연전선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전선 * 금속관공사, 가요전선관 공사 등 * 옥내소화전 준용	* 좌동 * 600V 비닐절연전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전선 * 비상전원배선-내화구조에 매설(MI케이블 사용시 예외) * 조작회로, 전동기배선 등은 금속관 공사 등의 방법(MI케이블 사용시 예외) * 개폐기는 불연재료함 등에 수납												
10. 전원, 동력	* 전용회로 구성 * 펌프실까지의 전선로는 화재 등 피해우려가 적은 곳	* 펌프용 전동기에 송전하는 전선로가 가공배선인 경우 건축물 측면에서 1.2m 이격하고, Slab구조 외의 건물은 수직상방 4m 이상 * 엔진펌프 세부기준 규정되어 있음												
11. 비상통보 설비	* 규정없음	* 건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00m 이내 화재경보기, 직통 전화벨, 경종설치												
12. 유지관리	* 옥내소화전 참조	* 옥내소화전 동일												
13. 소화훈련	* 규정없음 * 소방법 제9조(특수장소의 방화관리) * 소방법 시행령 제10조(소방계획)	* 주야 8명 이상 근무 * 5분 이내 소화활동 * 매월 1회 이상 훈련												

구 분	소 방 법 규	소 화 설 비 활 인 규 정
14. 할인대상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옥외 고가 발판설치-건물의 최고부에 대하여 지상으로부터 유효하게 방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건물의 옥외에 고가발판을 설치하여 그곳에서 안전하고 빠르게 소정의 방수를 할수 있으면 이를 「유효한 방수」로 인정 1. 옥외 고가 발판의 세부구조-규정없음 2. 방수기구의 설치-호스는 1개만 사용하되 1개로서 불가능할 경우 급수관으로 설치하고 지상 분기점에 밸브설치 3. 유효방수표-별표 참조 * 할인적용 제외물건-옥내소화전 참조

* 동력소방펌프 및 세척, 기타 설비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 연재할 예정입니다.

유효방수표(kg/cm²)

높 이(m)	노 출 구 경(mm)				
	19	22	25	28	38
15	3.2				
16	3.5	3.0			
17	3.8	3.2			
18	4.2	3.4	3.0		
19	4.6	3.7	3.2	3.1	
20	5.0	4.1	3.4	3.3	3.1
21	5.4	4.4	3.7	3.6	3.4
22	6.0	4.8	4.0	3.9	3.6
23	6.5	5.2	4.4	4.1	3.9
24	7.2	5.6	4.7	4.5	4.2
25	8.0	6.1	5.1	4.8	4.4
26	8.7	6.7	5.5	5.2	4.8
27		7.3	6.0	5.6	5.1
28		7.9	6.5	6.0	5.5
29			7.0	6.4	5.9
30				6.9	6.3

(계속)